

국회에서 의결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권한대행 한 덕 수 인
국 무 총 리

2025년 3월 25일

국 무 총 리 한 덕 수

국 무 위 원 김 완 섭
환 경 부 장 관

●법률 제20847호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

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의 제목 중 “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”를 “기상재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재해에”를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(이하 이 조에서 “기상재난”이라 한다)에”로, “협력”을 “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”를 “기상재난”으로, “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을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기술·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”을 “기상재난의 방지 및 대응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재난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청장이 인력·기술·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상재난에 대한 연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.

<법제처 제공>